

## I. 序 論

IMF救濟金融이라는 經濟危機속에 우리나라의 부분별 經濟構造 역시 빠르게 再編되고 있다. 기존의 金融産業改編이 어느 정도 皮相的이었다면 향후 다가올 변화는 質的·量的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속에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존에 등한시 하던 각종 전문 직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專門職賠償責任保險이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Occurrence)나 業務上의 不注意(Negligence), 怠慢 또는 失手(Errors/Omissions)로 타인에게 身體障害(Bodily Injury)나 유형 또는 무형의 財産損害(Property Damage)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기록적인 企業不渡와 不實監査의 파장이 드러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보험중개인등 금전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司法改革의 진행에 따른 法律專門職의 증가, 이미 종사자가 35만에 이르고 관계당국이 법률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醫療專門職, 신중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업자에 이르기까지 專門職賠償責任保險에 대한 潛在需要는 점차 可視化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전문직관련상품은 生命保險社의 敎職員, 聖職者, 軍人對象의 보험상품을 들 수도 있으나 이런 상품은 전문직업인의 傷害危險을 담보하는 상품이므로 실질적인 전문직위험담보 상

품은 損害保險社의 固有領域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S화재는 복권제작과정에서 번호가 잘못 기재되거나 같은 번호의 복권이 여러 장 만들어지는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복권공급업자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회사임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배상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도 일부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잘못된 건물안전진단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서베이전문인보상보험」, 세무사가 업무수행중 배상책임을 지게될 경우에 대비한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중 과실에 대비한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고 있다.

각 전문직업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으나 크게 사람의 身體와 接觸하는 專門職種(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혈액은행, 조산원, 접골사, 미용사, 안마사등), 金融·資産管理에 관련된 專門職種(회계사, 세무사, 회사임원, 보험중개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등), 建築關聯 專門職種(건축사, 설계사등), 法律關聯 專門職種(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등), 컴퓨터관련 專門職種, 放送·新聞關聯 專門職種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직업의 위험과 보험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보고서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본자료에서는 專門職危險과 保險制度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 후 향후 醫療關聯專門職과 其他專門職을 나누어 各 專門職種에 대한 具體的이고 體系的인 研究를 수행할 예정이다.